

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

2025. 5. 8.(목) 14:00
주민센터 회의실(2층)

2025年 5月-1호 [묘도동 회보]

-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, '묘도동'이 앞장서겠습니다. -



묘도동

목 차

I. 회의 자료

- ① 행정민원팀 1
 - 1. 제21대 대통령선거 일정 안내 1
 - 2.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편의 차량지원 제도 안내 2
 - 3.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처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3
 - 4. 2025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·접수 3
 - 5.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추가 신청·접수 4
 - 6. 2025년 수산공인 소규모어가 직불제 신청·접수 4
 - 7.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협조 사항 알림 5
 - 8. 재활용품 및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 안내 5

- ② 맞춤형복지팀 6
 - 1. 2025년 혼자 사는 저소득가구 방문보호제 실시 6
 - 2. 봄철 집중 자원봉사주간 운영 안내 7
 - 3.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 안내 8

II. 홍보자료 10

III. 이·통장의 신분과 의무 15

IV. 묘도동 통별 담당자 현황 19

1. 회의 자료

1 행정민원팀

1	제21대 대통령선거 일정 안내	이미연 (659-1690)
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

□ 투표안내

- 사전투표

- 일 시 : 2025. 5. 29.(목) ~ 5. 30.(금) 06:00~18:00
- 장 소 : 묘도동주민자치센터 1층(묘도1길 60)

- 본 투표

- 일 시 : 2025. 6. 3.(화) 06:00~20:00
- 장 소 : 묘도동주민자치센터 1층(묘도1길 60)

□ 협조사항 : 투표 일정 및 투표소 위치 주민 홍보 요청

**전입일자에 따른
선거일투표소 안내**

5. 7. 이후 주소지 변경
과거 주소지의
투표소에서 투표

5. 3.(토) ~ 5. 6.(화) 는 관공서 휴무일임을 참고하셔서
전입신고가 처리된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
2025년 6월 3일 화요일
(투표시간: 오전 6시 ~ 오후 8시)

선거일 투표소는
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인 5. 6.(화) 기준
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.

 중앙선거관리위원회

1. 「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차량(장애인콜택시) 지원」 제도란

(사전)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, 어르신, 임신부 등 거동불편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(사전)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투표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
2. 투표편의 차량지원 신청방법

사전투표일(2025. 5. 29. ~ 5. 30.) 또는 투표일(2025. 6. 3.)에 직접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불편 선거인에게서 여수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또는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로 투표편의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시면, (사전)투표일에 탑승할 차량과 활동보조인을 보내드립니다.

3. 투표편의 차량지원 신청 접수처

장애인, 어르신, 임신부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으로서 투표편의 서비스 및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아래 접수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(☎ 061-692-1390)
- 여수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(☎ 061-684-8236)

4. 신청(접수) 기간

- 사전 투표 : 2025. 5. 15. ~ 5. 28.까지(사전투표시작일 전일까지)
- 선거일투표 : 2025. 5. 15. ~ 6. 2.까지(선거일 전일까지)

5. 신청 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: 선거권자명, 실제거주지, 연락처, 투표 희망 시간, 투표소 등



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

협조사항: 주민 대상 홍보 및 문의 시 주민센터로 안내

3	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처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	이수빈 (659-1700)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

신청개요

- 신청기간: 2025. 4. 23.(수) ~ 5. 13.(화)
- 신청방법: 마을별 처리량 취합 후 마을 통장이 사업 신청서 제출
- 지원대상: 관내 주소 및 농지를 두고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처리하는 농업인
- 지원내용: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처리비용 80%지원
 - 300kg 미만 : 대형폐기물 20kg당 스티커(2,000원) 구입비
(예시)폐기물 280kg인 경우 스티커 구입비(14매) 28,000원 중 **22,400원(지원)** 5,600원(자부담)
 - 300kg 이상 : 민간 폐기물 수거업체 처리비
(예시)폐기물 1,000kg인 경우 300,000원 중 **240,000원(지원)** 60,000원(자부담)
- 대상품목: 점적호수, 폐차광막, 부직포, 폐보온커트 등
 - ※ 재활용가능한 폐비닐, 폐농약용기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
- 지원단위: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200kg 이상

협조사항: 마을별 신청내역 취합하여 5. 13.(화)까지 신청서 제출

4	2025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·접수	이수빈 (659-1700)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

신청개요

- 신청기간: 2025. 4. 24.(목) ~ 5. 23.(금)
- 신청방법: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지원대상: 관내 여성어업인(어업경영체 등록 혹은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)
- 지원연령: 만51세 이상(1974. 12. 31. 이전 출생)
- 지원내용: 여성어업인 직업성질환 특화건강검진비 **90%**지원
- 검진기관: 여수중앙병원(전남 여수시 둔덕2길 6-3)
- 제출서류: 참여신청서, 본인 신분증 사본

협조사항: 주민 대상 홍보 및 문의 시 주민센터로 안내

5	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추가 신청·접수	이수빈 (659-1700)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

신청개요

- 신청기간: 2025. 5. 12.(월) ~ 5. 23.(금)
- 신청방법: 신분증, 도장 지참하여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신청대상: 도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
 - 20세 이상 80세 이하인 자(1945. 1. 1. ~ 2005. 12. 31. 출생자)
 - 농·어·임업 경영체 등록, 어업관련 허가에 등록된 자
- 지원액: 연간 20만원/1인
- 지원내용: 여성농어업인의 문화 복지 생활을 위해 대상자 명의의 NH농협채움카드(체크, 신용)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
 - ※ 카드를 소유하지 않은 대상자는 신규로 농협채움카드 발급 필요

협조사항: 미신청 주민 대상 홍보 및 주민센터로 안내

6	2025년 수산공익 소규모어가 직불제 신청·접수	이수빈 (659-1700)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

신청개요

- 신청기간: 2025. 5. 19.(월) ~ 7. 31.(목)
- 신청방법: 신청 자격을 갖춘 어가 대표인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
- 지원대상
 -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5톤미만의 연안구획 내수면 어업허가를 받은 소규모어가
 - 어업 또는 양식업을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 해온 어업인
- 지원금액: 어가 당 연간 130만원
- 제출서류: 가족관계증명서, 등본, 통장사본, 조업실적 60일 이상 또는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 증빙서류
 - ※ 위판실적, 거래명세표, 세금계산서, 어촌계 사매매 장부, 구매확인서, 입·출항 신고(해경발급) 등

협조사항: 주민 대상 홍보 및 문의 시 주민센터로 안내

7	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협조 사항 알림	이수빈 (659-1700)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

□ 협조사항

- 지정폐기물(염산통 등)은 해양쓰레기로 수거 불가
 - 김 양식 등에 사용 후 버려진 염산통의 수거처리 과정에서 화재 발생 위험
- 정화선 접안이 어려운 지역은 육상 수거가능지역에 해양쓰레기 마대를 적치 협조
 - 시내권 지역은 관광객 등 인파가 몰리는 곳에 적치 금지(민원 발생)
- 선상 집하장에 해양쓰레기 외 적치 금지
 - 육지 쓰레기, 위험물 등을 집하장에 투기하여 정화선에 화재 발생 사례가 있음

8	재활용품 및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 안내	최현아 (659-1693)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

□ 협조사항

- 품목별, 종류별 분리하여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 배출
- (골판지, 박스) 테이프 등 다른 재질 제거,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접어서 배출
- (신문, 책자류) 스프링 등 다른 재질 제거 후 배출
- (비닐, 필름류) 내용물 및 부착물 제거/ (스티로폼) 이물질 세척
- (플라스틱) 음식물 등 내용물과 부착물 깨끗이 제거 후 압착하여 배출
- 깨끗한 비닐 재활용 가능 ⇒ 투명비닐봉지에 담아 배출

2026
 여수세계성박람회
 2026. 9. 2. ~ 11. 4.

생활쓰레기, 재활용품

배출 이렇게 해주세요!

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

비운다

행군타

분리한다

섞지 않는다

생활쓰레기

배출시간 당월 20:00 ~ 다음날 05:00

배출금지 주간(낮 시간) 및 일요일

배출방법 규정된 총량제 봉투의 묶음선 아래까지만 채움
→ 무게 : 75L봉투 15kg이하
50L봉투 10kg이하
※ 낚시용품, 현수막, 깨진 병, 소량의타일이나 전정 가지 ⇒ 총량제봉투로 배출

음식물쓰레기

배출시간 당월 20:00 ~ 다음날 05:00

배출금지 주간(낮 시간) 및 일요일

배출방법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배출
- 단독주걱, 상가 - 전용 수거 용기에 납부필증(스티커)을 부착하여 우리 집 문 앞, 상가 앞
- 공 동 주 썩 - 공용 전용 수거 용기

재활용품 ★ 품목별 묶거나 투명·반투명 비닐 봉투에 담아 배출 ★

<h4 style="text-align: center; background-color: #0056b3; color: white;">플라스틱류</h4> <p>내용물을 깨끗이 세척하여 다른 재질로 된 부분(상표 등)은 제거 후 압착하여 배출</p> <p>투명페트병(유색 생수병, 무색 음료수병)은 별도로 배출</p>	<h4 style="text-align: center; background-color: #0056b3; color: white;">페스티로폼류</h4> <p>박스테이프, 송장 등 이물질들을 제거하여 원형 상태로 배출</p>	<h4 style="text-align: center; background-color: #0056b3; color: white;">비닐류(필름류)</h4> <p>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 물기 제거 후 원형 상태로 배출</p>
<h4 style="text-align: center; background-color: #0056b3; color: white;">철캔, 알루미늄캔, 유리병류</h4> <p>내용물을 깨끗이 행군 후 배출 ※ 담배꽂초 등 안에 넣지 마세요! ※ 플라스틱 뚜껑 등 다른 재질 제거 후 배출</p>	<h4 style="text-align: center; background-color: #0056b3; color: white;">종이</h4> <p>비닐코팅, 빨대, 테이프 등 다른재질 부분을 제거 후 배출 물기에 젖지 않도록 반듯하게 펼친 후 묶어서 배출 종이류와 종이팩은 따로 분리 배출</p>	<h4 style="text-align: center; background-color: #0056b3; color: white;">재활용 불가 품목</h4> <p>페스티로폼 : 과일 포장 완충재, 1회용 컵라면 용기, 도시락 용기, 유색스티로폼, 보냉병뚜, 건축재스티로폼 깨진 유리병, 내열식기류, 도자기류, 조영기구용 유리등은 신문지 등에 감싸서 총량제로 배출</p>

★ 대형폐기를 배출방법은 뒷면을 참고해주세요 ★

여수시
 659-1693

2] 맞춤형복지팀

1	2025년 혼자 사는 저소득가구 방문보호제 실시	주희영 (659-1691)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

□ 추진개요

- 방문 기간 : 2025. 1. 1. ~ 2025. 12. 31.(연중)
- 방문 대상 : 20세대
 - 혼자 사는 노인, 장애인, 청장년 1인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단독가구
 - 단독가구는 아니나 장애, 정신질환 등으로 구성되어 관리가 필요한 가구
- 실시 주체
 - 통·반·이장으로 하여금 「방문 대상 가구」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생활실태를 파악
 - 통·반·이장은 방문 결과 「읍·면·동 신고 사항」에 해당하는 가구가 있는 경우 읍·면·동에 즉시 신고
- 방문(확인) 방법 : 통장단 세대 방문 확인(월2회)
- 방문(확인) 내용
 - 계속 거주 여부 , 전기·가스·난방 등 공급중단 여부, 기타 필요 서비스, 안부 확인 등

□ 협조사항

- 매월 첫 번째 통장 회의 시 배부되는 ‘혼자 사는 저소득가구 방문보호제’ 명단을 참고하여 대상자 상담 내용 및 일자, 조치 상황 등 작성하여 매월 두 번째 통장 회의 시 맞춤형 복지팀으로 제출

□ 운영개요

- 기 간 : 5. 31.(토) 까지 / ※ 산불예방: 5. 15.(목)까지
- 대 상 : 여수시민 누구나
- 중점분야
 - 봄철 특수성을 고려한 산불 예방·피해 지원
 - 농어촌 일손돕기, 봄맞이 마을 가꾸기 참석
 - 섬섬여수 불런투어 참여 등 봉사와 나눔 실천 참여



- 협조사항 : 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자원봉사 참여 및 분위기 조성 협조

3	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 안내	이종기 (659-1699)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

1 기본개요

- 목적 : 긴급지원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*로 지정함으로써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보호
- 근거 :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7조(지원요청 및 신고)
- 내용 : 신고의무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·군·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,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

2 신고의무자의 범위

- 근거 :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7조제3항
 - 의료기관 종사자, 교직원 또는 강사, 사회복지시설 종사자
 -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, 장애인시설 종사자, 학원 장 및 강사
 - 건강지원센터 장과 종사자, 청소년 보호·자활센터 종사자
 - 평생교육기관 장과 종사자
 -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※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
(마을 이·통장 등)
- 신고방법 : 보건복지상담센터(국번 없이 129) 또는 동사무소 긴급복지 지원 담당자(061)659-1699)로 대상자의 성명, 연락처, 대략적 위기상황 등을 유선으로 신고

3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안내

- 주 소 :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홈페이지
[<https://edu.kohi.or.kr/in>]
- 수강방법 :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 수강

II. 홍보자료

OK! Now Jeonnam

전라남도

5월 전남 방문의 달

익스트림 투어

엄마 품 같이 포근한 전남으로 오세요



5월, 전남이 준비한 특별한 혜택

빅3 반값 할인혜택

① **숙박 반값!**

② **위케이션 반값!**
(휴가지 원격근무)

③ **주요 관광지·체험상품 파격 할인!**

자세한 사항은 [전남 관광플랫폼 JN TOUR](#)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봄철 재난·안전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

해빙기 산불 어린이 안전 축제·행사

2025. 3. 1. ~ 2025. 5. 31.



재난·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위험요소는 '안전신문고'로!

- ⚠ 참여대상 : 국민 누구나(외국인 포함)
- ⚠ 신고방법 :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 (www.safetyreport.go.kr)



안전신문고 앱 Play 스토어
App Store에서 다운로드 신고하세요

2025. 5.

남해안 거점도시 **미항여수**

여수 출신 이달의 독립운동가

- ▶ 성 명 : 최풍룡(崔豊龍)
- ▶ 출 생 지 : 삼산 동도 출생
- ▶ 출생연도 : 1905년 7월 17일
- ▶ 사 망 일 : 1937년 4월 14일
- ▶ 운동분야 : 국내항일
- ▶ 훈 격 : 건국포장(2019)
- ▶ 공적내용



- 1926년 10월 부산 제2상업학교에 다니며 김귀문 등 전남 출신 학생들과 함께 호남학우회를 조직해 사회주의 사상을 학습하고 회지를 발행하여 일본의 정책을 비판,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을 했다.
- 1928년 4월경 고향인 여수 삼산면 동도리에서 동도리소년회의 기관지로 『망양봉(望洋峰)』을 인쇄하여 회원들에게 배포했다.
- 1930년 8월 체포되어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 및 불경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으로 송치되었다 1931년 6월 20일 면소 처분을 받고 출옥, 1937년 고문후유증으로 순국했다.
-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19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.



첨부 4

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관련 법령

□ 긴급복지지원법: 신고의무자의 범위 규정

긴급복지지원법 제7조(지원요청 및 신고)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·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,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
2.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교원, 직원, 산학 겸임교사, 강사
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
4.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
5.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
6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·강사·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·직원
7.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8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
9.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·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10.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
11.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**보건복지부령**으로 정하는 자

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2(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) 법 제7조제3항제11호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**행정리의 이장**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**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**
2. 「별정우체국법」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
3. 동·리의 **새마을지도자** 및 **부녀회장**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·복지 분야나 민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의 직원
- 4.

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,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·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□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: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, 시간 및 방법 규정

제2조의3(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)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(이하 "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"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
2.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
3.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 시켜야 한다.

③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·시설 등의 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.

④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Ⅲ. 이·통장의 신분과 의무

□ 이·통장의 신분

○ 관련근거 : 「여수시 이장·통장·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」 (2017. 4. 7.)

○ 임용권자 : 읍·면·동장

○ 자격 및 임기

- 리·통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지역민에게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. 다만, 신설되는 리·통은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- 임 기 : 2년,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

* 아래 해임사유로 인해 기존 이·통장 해임 후 새로 임명된 이장·통장·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○ 해임 사유

- ① 신체 또는 정신상의 문제로 이장·통장·반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
- ② 형사사건으로 정식 기소된 경우
- ③ 임기 중 사망하거나 해당 리·통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
- ④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
- ⑤ 이장·통장·반장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 추진 능력이 떨어진다고 읍장·면장·동장이 판단하는 경우
- ⑥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이장·통장·반장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읍장·면장·동장이 판단하는 경우

□ 이 · 통장의 지위

- 이·통장은 이·통을 대표한다.
- 읍·면·동장의 업무보조자
 - 이·통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읍·면·동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준(準) 공무원이라 할 수 있다.
- 이·통민방위대의 대장
 - 이·통장은 이·통민방위대의 대장으로서 대원관리와 통솔권한을 가진다.

□ 이 · 통장의 임무 (「여수시 리 · 통 · 반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6조)

- 반장의 지도 · 감독과 반원의 지도
-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사항 보고
- 주민의 거주, 이동상황 파악
- 각종 사실 확인
- 리 · 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· 자율적 업무 처리
-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

□ 이 · 통장의 의무

- 비밀유지(「여수시 리 · 통 · 반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2조)
 -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자료 등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됨
- 금품징수의 금지(「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)
 -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사항 이외에 경비충당을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도 징수할 수 없음
 - 반의 경비 충당을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음
- 선거운동 등 선거관계 금지(「공직선거법」 제60조)
 - 업무수행 등 대민접촉을 통하여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 금지
 - 정당의 당보, 입후보예정자와 관련된 책자·유인물 등을 배부하거나 정당행사·정당연설회 등에 주민들의 참석을 권유하는 행위

- 제3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주는 행위

☞ 위반 시 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(법255조)

※ 이·통·반장이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, 선거사무원, 회계책임자, 연설원, 대담·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이·통장직을 사직하여야 하며,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통장직에 복직될 수 없다.

□ 주민의 참된 봉사자

- 이·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,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주민의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함은 물론 리·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.
- 소속 반장을 통솔 지도·감독한다.
- 어려운 이웃돕기에 솔선하고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읍·면·동사무소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게 한다.

□ 국·도·시정 시책 홍보 전파

- 국·도·시정 시책의 대주민 홍보
- 시책에 대한 주민의 반응·여론을 청취하여 읍·면·동장에게 보고

□ 동향파악 읍·면·동장에게 보고(초동 연락임무)

- 각종 회의나 행사(일시, 장소, 참석인원) 파악 보고
(아파트자치회의, 부녀회의, 노인회의, 간담회, 각종 모임 등)
- 사건사고 및 재난·재해 발생사항 보고
(산불, 교통사고, 선박안전사고, 폭발사고, 옹벽붕괴, 매몰 등)
- 생활불편사항(상하수도, 가로·보안등 고장, 도로·교통·환경문제 등)
- 각종 집단민원 발생에 관한 사항
- 주요인사 방문사항 (국회의원, 주요기관장, 주요출향인사, 관광지개발시찰단 등)
- 각종 미답수범사례 발굴 등

□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노력

- 주민 생활불편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을 세심하고 폭넓게 수렴
- 읍·면·동사무소에 전달하여 주민숙원사업이 해소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

□ 이·통 민방위대장으로서 업무 수행

- 민방위비상소집훈련 참석대원 인원점검 및 훈련참관
- 민방위대원교육 훈련통지서 교부
- 민방위 대원 자원결산 시 거주지 확인
- 민방위 훈련 시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확인
-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사태 등의 신고망 관리 운영

□ 주민등록 관리 협조

- 전입신고자에 대해 이·통장 사후확인 읍면동에 제출
- 주민등록 사실조사 협조·확인

□ 각종 행사·캠페인 등 참여

- 시, 읍·면·동 단위 주요행사 출석 참여
- 읍·면·동 단위 체육행사, 경로위안잔치 등에 주도적 역할수행
- 아름다운 여수 가꾸기 시민운동

□ 읍·면·동 주민센터의 정례적인 업무처리 협조

- 적십자회비 모금 협조(연 1회)
- 마을단위 공동방역 실시(하절기)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료 봉투지급(분기 1회) 등

Ⅳ. 묘도동 통별/업무별 담당자 현황

업 무	담 당 자	행정전화	담당 통	비 고
선거, 주민자치, 체육	김 회 인	1689		행정민원팀장
경로당, 노인일자리, 공중목욕장	배 민 경	1696		맞춤형복지팀장
총무, 기획, 감사, 시민소통, 건설, 교통	이 미 연	1690	3	
예산, 회계, 환경녹지, 공공근로, 이륜차 신산업에너지과	최 현 아	1693	1	
농업, 해양수산, 관광, 산림·공원 안전총괄, 도로시설	이 수 빈	1700	2	
주민등록, 제증명, 인감, 문화, 상하수도, 민방위	심 제 형	1697		
사례관리, 노인의료 통합돌봄, 보건소, 보안등	정 고 은	1698	5	
복지사각, 긴급지원, 후원, 지역사회보장협의체, 고독사	이 중 기	1699	6	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양곡, 노인장애인복지, 여성아동복지	주 희 영	1691	4	

《 2025-5-1 통장회의 자료 》



※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.

여수시 묘도동 직원은 어떠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지 않으며, 만약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신고(☎659-3061)할 권리가 있습니다. 또한 묘도동 직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
여수시 묘도동

여수시 묘도1길 67(묘도동) TEL (061)659-1686 FAX (061)659-1926